

보도 시점 2025. 9. 17.(수) 조간
2025. 9. 16.(화) 12:00 배포 2025. 9. 16.(화)

장애인 지역사회 자립지원 시범사업 3개 지역 추가 선정

- 시범사업 공모 결과, 울산, 대전, 충북 3개 광역지자체 추가 선정 -
- 장애인 지역사회 자립지원 본사업 전환을 위한 시범사업 전국 확대 추진 -

보건복지부(장관 정은경)는 「장애인 지역사회 자립지원 시범사업(이하 “자립지원 시범사업”) 지자체 공모」를 통해, 울산광역시, 대전광역시, 충청북도 3개 광역지방자치단체를 추가 선정했다. 이에, 본 시범사업 시행 지역은 32개 지자체*에서 35개로 확대될 예정이다.

* 32개 지자체 : (광역 7개) 서울, 부산, 인천, 대구, 광주, 전북, 충남,
(기초 25개) 성남시, 의왕시, 안산시, 부천시, 시흥시, 이천시, 구리시, 안성시, 포천시, 양평군, 양주시, 평택시, 서산시, 경주시, 안동시, 구미시, 영천시, 전주시, 군산시, 익산시, 강릉시, 인제군, 거창군, 화순군, 제주시(행정시)

2025년 3월 「장애인의 지역사회 자립 및 주거 전환 지원에 관한 법률* (이하 “장애인지역사회자립법”）」이 제정(2027년 3월 시행)됨에 따라, 자립 희망 장애인이 지역사회에서 자립하여 우리의 이웃으로 함께 살아갈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하고, 자립지원 시범사업의 본사업 전환을 위한 법적 기반을 마련하였다.

* (주요내용) 실태조사 및 기본계획 수립, 중앙·지역센터 설치, 전담인력 배치, 자립장애인 지원범위, 개인별 지원계획 수립 및 주택, 주거생활서비스 연계 등

이번 공모는 자립지원 시범사업 본사업 전환을 위해 시범사업에 광역지자체 내 기초지자체가 1곳도 참여하지 않은 광역지자체(울산, 대전, 세

중, 중복)를 대상으로 실시하였고, 참여 지자체의 사업추진 의지와 역량, 사업계획의 구체성, 광역-기초지자체 간 협업체계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하여 최종 선정하였다.

특히, 최근 지역사회 자립지원의 필요성이 높아지고 있는 울산광역시 자립지원 시범사업 지역으로 합류하게 되어 이번 공모의 의미가 크다고 볼 수 있다.

추가 선정된 지역은 중앙장애인지역사회통합지원센터의 시범사업 운영 기본 매뉴얼 교육 및 지역별 사업계획에 따른 맞춤 컨설팅 등의 지원을 받고 사업을 시작하게 된다.

보건복지부는 자립을 희망하는 장애인의 주거선택권을 보장하고, 지역사회로의 자립을 지원하기 위해 로드맵(2021년 8월)과 장애인정책종합계획에 장애인 지역사회 자립지원 정책의 기본방향을 수립하였으며, 2022년 8월부터 자립지원 시범사업을 시작하였다.

자립지원 시범사업 참여 지자체는 자립지원위원회의 면밀한 검토를 통해 자립대상자를 선정하고, 선정된 자립대상자의 개인별 지원계획 수립 및 안정된 생활을 유지할 수 있도록 주거생활 서비스*를 연계·제공하고 있다.

* 기초생활보장(생계·주거급여), 활동지원서비스, 일자리, 건강관리(보건소, 지역보건의료센터 등), 주거환경개선, 재산관리서비스 등

자립지원 시범사업 초기에는 자립을 희망하는 시설입소(장·단기거주시설 등) 장애인을 자립지원 대상으로 하였다면, '24년부터는 보호자의 장기부재(입원, 사망 등), 학대피해 등 자립이 필요한 시설 입소 가능성이 높은 재가 장애인을 지원 대상으로 추가하여 자립지원 대상자 범위를 확대하였다.

2025년 7월 기준, 396명의 장애인이 자립지원 시범사업에 참여하여 지역사회로의 주거 전환 및 주거생활 서비스를 제공받고 있으며, 참여 대상자는 지속적으로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손호준 장애인정책국장은 “자립을 희망하는 장애인이 지역사회에서 자립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것은 국가의 책무로, 시범사업 지역 확대로 더 많은 분들이 자립을 지원받을 수 있게 될 것이다” 라며, “2027년 3월 법 시행 시까지 하위법령 마련뿐만 아니라, 자립지원 시범사업을 안정적으로 운영하며 본사업 시행 준비를 철저히 해 나갈 계획이다.” 라고 밝혔다.

<붙임> 2025년 장애인 지역사회 자립지원 시범사업 연계 서비스 현황

담당 부서	장애인정책국 장애인정책과	책임자	과 장	성재경 (044-202-3280)
		담당자	서기관	정순애 (044-202-3181)



구분		집중지원형	자립지원형	자립유지형
지원유형별 대상		· 주거전환, 의료 및 도 전적 행동 등 집중지 원이 필요한 장애인	· 일자리, 낮활동 연계 등 지역사회 활동 지원이 필요한 장애인	· 지역사회 거주하며 금전 관리 및 자기옹호 지 원이 필요한 장애인
자립 준비	주거관련	· 한국토지주택공사(LH) 등 공공임대주택 연계 · 주거환경조성(신규 자립대상자 중 필요 시 600만원 범위 내 지원)		
	자립정착금	· (지자체별 자체) 자립정착금 지원 * 전국 광역시도별 6백~20백만원 규모로 자체 지원 중		
소득 보장		· 장애인연금, 장애수당 · 기초생활보장 생계, 주거급여 등		
권익 지원		· 공공후견인, 공공신탁제도 등		
지역사회 참여 및 일상생활 지원 등	자립지원 인력	· 지원유형별 배치 (자립유지형 6인~8인, 자립지원형 3인~5인, 집중지원형 2인) · 사례관리 및 주거생활서비스 지원, 야간 및 긴급상황 대응 등		
	활동지원	· 활동지원서비스(서비스지원 종합조사를 거쳐 월별 60~480시간 지원) · 발달장애인 주간활동서비스(기본형 132시간, 확장형 176시간) · 지자체별 추가 지원(지자체별 월 10~100시간 내외)		
		· 시범사업 추가지원 (+월 200시간 이하)	· 시범사업 추가 지원 (+월 20~40시간)	· 시범사업 추가지원 없음
	일자리 참여	· 중증장애인 동료상담가 사업 참여(가점 10점 적용) · 지역 맞춤형 취업지원 및 직업재활시설, 장애인 일자리사업 참여(가점 10점 적용) · (본인희망시)직업적응 훈련시설 훈련 연계		
	보건 의료	· 장애인 건강주치의 등 연계 · 방문건강 관리사업 연계 · 지역장애인 보건의료센터 협력 · 기초생활보장 의료급여 · 의료지원비 1명당 40만원 지원 · 신규 자립대상자 중 필요 시 보조기기 구매 지원 1명당 300만원 지원		
	발달장애인 재산관리 서비스	· 국민연금공단 발달장애인 재산관리서비스 사업 참여 · 한국자폐인사랑협회 재산관리 및 신탁서비스 참여		
	문화 및 여가활동	· 여성장애인 교육지원 · 장애인 생활체육 프로그램 참여 · 장애인복지관 및 IL센터 프로그램, 지역주민활동 등 민간사업 등		
야간 및 긴급대응		· 응급안전안심서비스 · 지역 내 소방서 안전점검, 경찰서 등 안전체계 구축 및 지역자원 연계 · 기타 실종, 이탈 예방 관련 자체사업 연계		

* 음영 : 시범사업 별도 예산 지원사항